

美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재개 및 새로운 조사·집행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6월 9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5년 2월 10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일시중단 행정명령¹⁾ 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향후 FCPA 조사 및 집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발표하였습니다.²⁾ 이로써 FCPA 관련 조사 및 기소 활동이 즉각 재개되었습니다.

DOJ는 앞으로의 FCPA 집행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초점을 둘 것이며, 미국 및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행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9일 발표된 DOJ 가이드라인과 2025년 6월 10일 Matthew R. Galeotti, 미국 법무부 형사부서장(Head of the DOJ Criminal Division)이 American Conference Institute 주최 Global Anti-Corruption, Ethics, & Compliance Conference에서 발표한 연설문의³⁾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 기준의 방향

- 미국 기업과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집중
-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집행 예고:
 - 조직범죄·카르텔 연루
 - 미국 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국가안보 관련 분야(방위, 에너지, 인프라 등)에서의 뇌물 행위
 - 고의성 높거나 은폐 의도가 명확한 행위(고액 뇌물, 은폐, 사기, 은폐 시도 등)
- 반면, 일상적 관행 수준의 소액 접대나 업무상 편의 제공은 집행 대상에서 배제

Related Areas

해외소송·해외정부조사

Contact

신동찬 변호사

02-528-5356

tcshin@yulchon.com

김용상 외국변호사

02-528-5260

yongsangkim@yulchon.com

권민정 외국변호사

02-528-5034

mjkwon@yulchon.com

1) 2025년 2월 10일 (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집행을 180일간 일시 중단하고, 미 법무장관에게 새로운 지침 또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관련 Legal Update: [트럼프 대통령,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시 중지 행정명령 서명](#)

2) <https://www.justice.gov/dag/media/1403031/dl>

3) <https://www.justice.gov/opa/pr/head-justice-departments-criminal-division-matthew-r-galeotti-delivers-remarks-american>

● 절차 관련 변화

- 모든 신규 FCPA 조사·집행은 미 법무부 형사부(Criminal Division)의 Assistant Attorney General 또는 그 상위 권한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임직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

● 자진신고 및 협력 독려

- 자진 신고, 조사 협조, 적절한 시정 조치가 있을 경우 기소 면제, 처벌 완화, 모니터링 최소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할 것
- 특히,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협력이 중요
- 반대로 자진신고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DOJ는 “신속하고 공격적인(swiftly and aggressively)”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이번 DOJ 가이드라인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패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DOJ의 엄격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미국 내 자회사를 보유한 외국 기업 등 미국과 연결고리를 가진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자진신고 전략 등 초기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FCPA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
- 자진 신고 및 조사 대응을 위한 명확한 내부 프로토콜 수립
- 전사적 준법 문화의 정착과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대응을 통해 DOJ의 강화된 집행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경제제재 및 해외 정부 조사 분야 변호사들은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자문에 응해 오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율촌은 특정 거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제재를 준수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은 미국 우수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FCPA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이상의 검토 내용은 미국 정부 등의 공식발표자료 및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이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귀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법무법인(유) 율촌은 위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